

청평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1. 0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1
1.2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	1
1.3 계획의 내용 .....	2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	4
1.5 계획의 기대효과 .....	4

## 제 2 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	5
2.2 환경질 현황 조사계획 .....	10
2.3 대안의 설정 .....	11
2.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15

## 제 3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	17
3.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20

##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기존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하천 및 행정구역 단위로 수행되어 왔으나, 국가하천에 비해 지방하천의 기본 계획 수립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동일 권역 내 하천의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많았으며, 권역 내 각 하천간의 기본계획 수립 시기, 수립주체 등이 서로 상이하여 자료 공유 및 활용, 사업추진 등 협의·조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권역별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되두되어 왔음
- 청평댐권역은 그간 하천개수사업 추진, 도시화 및 기상변화 등으로 인하여 하도 및 수문·수리특성변화와 하천의 관리 운영의 미비점 보완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유량, 수질 및 생태, 하천 이용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하천의 종합정비 및 이용,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작성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하천의 유지관리 등 수자원 종합 개발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결정함에 있어 사업계획이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구간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여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개발기본계획은 경기도 가평군, 남양주시, 양평군 일대 지방하천 3개소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하고자하는 개발기본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2]의 「개발기본계획」 중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코자 함

〈표 1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비 고
2. 개발기본계획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 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계획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지방하천 3개소, 총 연장 59.27km)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 1.3 계획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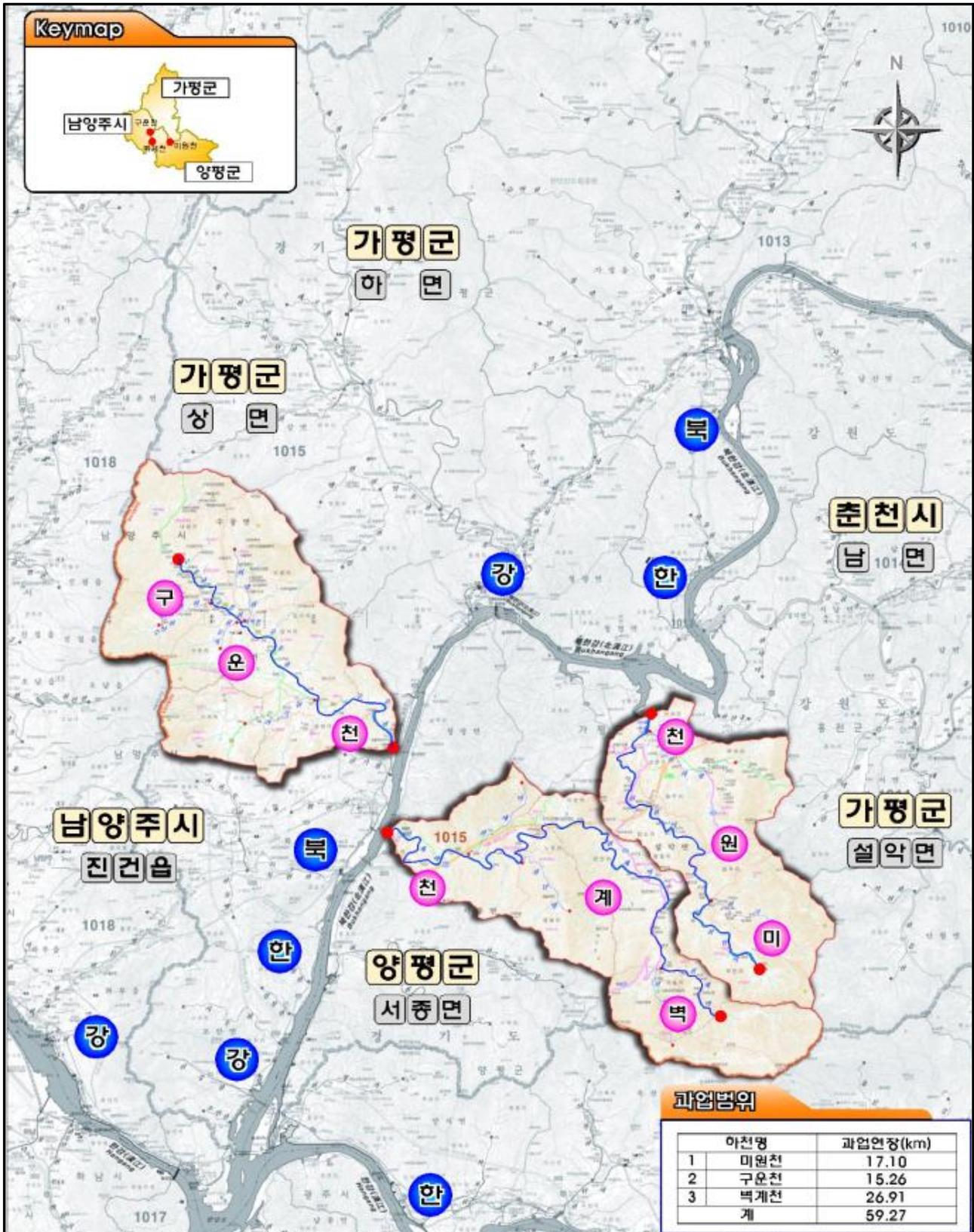
- 계 획 명 : 청평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남양주시, 양평군 일원
- 연 장 : 지방하천 3개소(L=59.27km)
-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승 인 기 관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협 의 기 관 : 한강유역환경청

〈표 1 - 2〉 계획하천 현황

하천명	등 급	위 치		하천연장 (km)	유역면적 (km <sup>2</sup> )
		시 점	종 점		
미원천	지방	경기 가평군 설악면 목안리	경기 가평군 설악면 북한강(국가) 합류점	17.10	62.76
구운천	"	경기 남양주시 수동 내방리	경기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국가) 합류점	15.26	87.97
벽계천	"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경기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국가) 합류점	26.91	78.09
계		지방하천 3개소		59.27	228.82

〈표 1 - 3〉 하천지정 및 고시현황

하천명	하천 등급	행정 구역	경 계		하 천 연 장 (km)			하천지정 근거 및 일자
			시 점	종 점	계	하천기본계획		
						수립 구간	미수립 구간	
미원천	지방	경기도 가평군	경기 가평군 설악면 목안리	경기 가평군 설악면 북한강(국가) 합류점	17.10	17.10	-	경기3148호 (1965.03.01)
구운천	지방	경기도 남양주시 가평군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경기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국가) 합류점	15.26	15.26	-	경기3148호 (1965.03.01)
벽계천	지방	경기도 양평군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경기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국가) 합류점	26.91	26.91	-	경기54호 (2004.02.02)



[그림 1 - 1] 계획하천 위치도

##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표 1 - 4〉 추진경위 및 계획

구 분	추진내용
2020. 11	청평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2021. 0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03/02~03/19)
2021. 04	결정내용 공개(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 14일 이상 공개)
2021. 08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2021. 09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 설명회
2021. 1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요청

## 1.5 계획의 기대효과

- 상위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특성을 반영하여 개수 및 통수능력을 확보하고, 시설을 개량하여 최적의 우수배제 기능 확보로 홍수피해 예방
- 하천의 자연적 특성을 살리며 지역사회 발전에 부응하는 하천환경조성
- 환경친화적 하천조성으로 수변경관 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치수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주민의 안정된 영농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

##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 2.1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 가. 평가항목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0-289호), 2020. 12. 22, 환경부」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제시된 [별표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함

〈표 2 - 1〉 평가항목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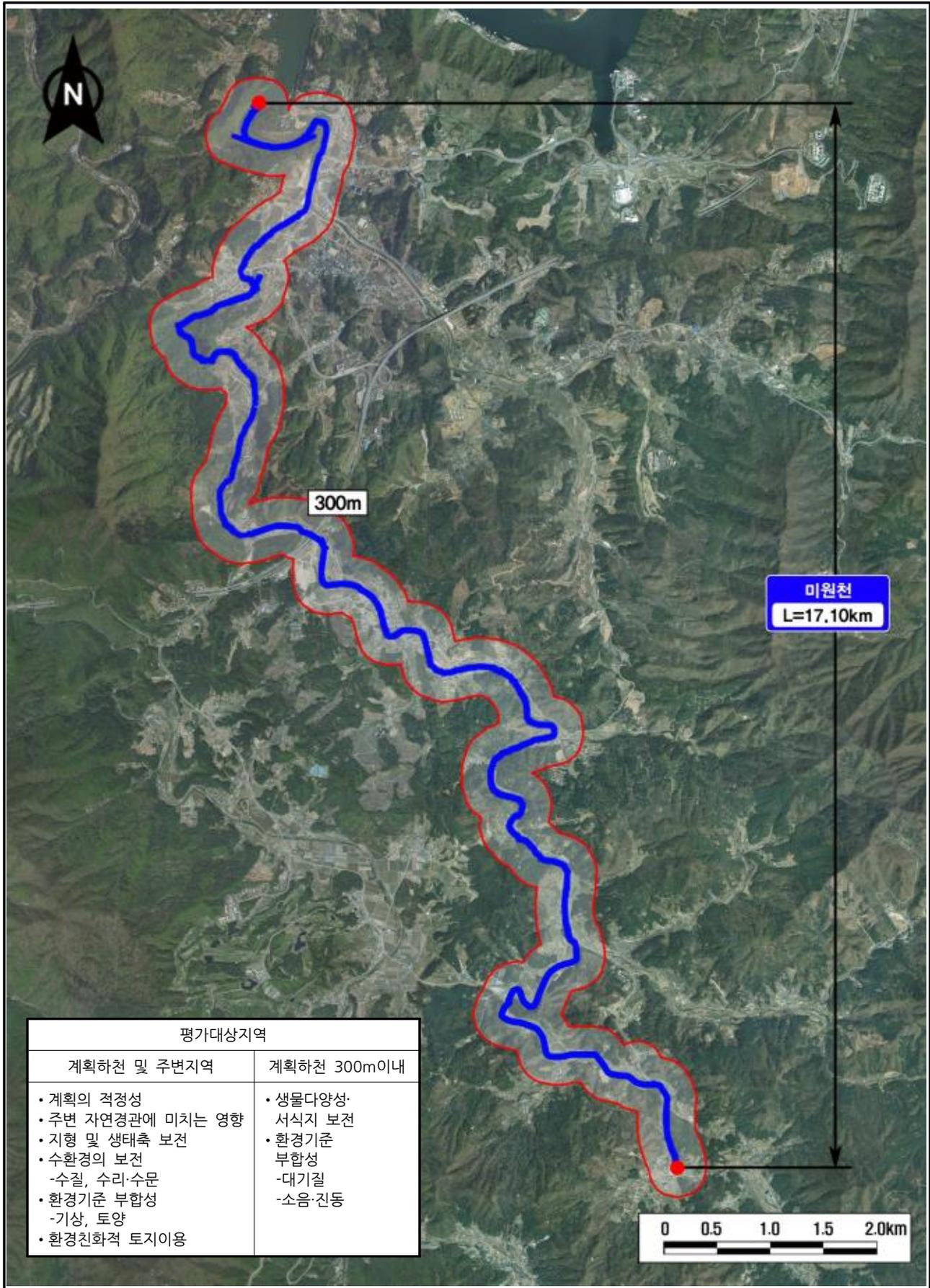
평가항목		선정결과			선정사유	비 고		
		중점	현황	제외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	-	• 계획의 비교 측면에서 대안 비교·검토	-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	-	• 계획시행에 따른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의 동·식물상 변화여부 • 공사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동·식물상, 자연환경 자산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	-	• 계획내용을 토대로 지형변화 및 생태축 변화 여부 검토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	-	• 계획시행에 따른 계획하천 및 주변 경관영향 예상	-		
	수환경의 보전	○	-	-	• 공사시 부유물질 발생으로 인한 수계영향 및 대책수립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홍수위 등 변화 • 수질오염총량 대상지역	수질, 수리·수문		
입지의 타당성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	-	• 계획하천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
			대기질	○	-	-	• 계획하천 주변환경을 고려한 대기질 현황 파악 • 공사시 장비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영향	-
			약취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
			토양	○	-	-	• 계획하천 공사 시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예상 등	-
			소음·진동	○	-	-	• 계획시행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영향	-
			일조장해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온실가스	○	-	-	• 공사시 분뇨 및 생활, 건설, 지정 폐기물 발생	-
			온실가스	○	-	-	• 공사시 장비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	-	•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예상	-	
		인구 및 주거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	-	
산업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	-		

나.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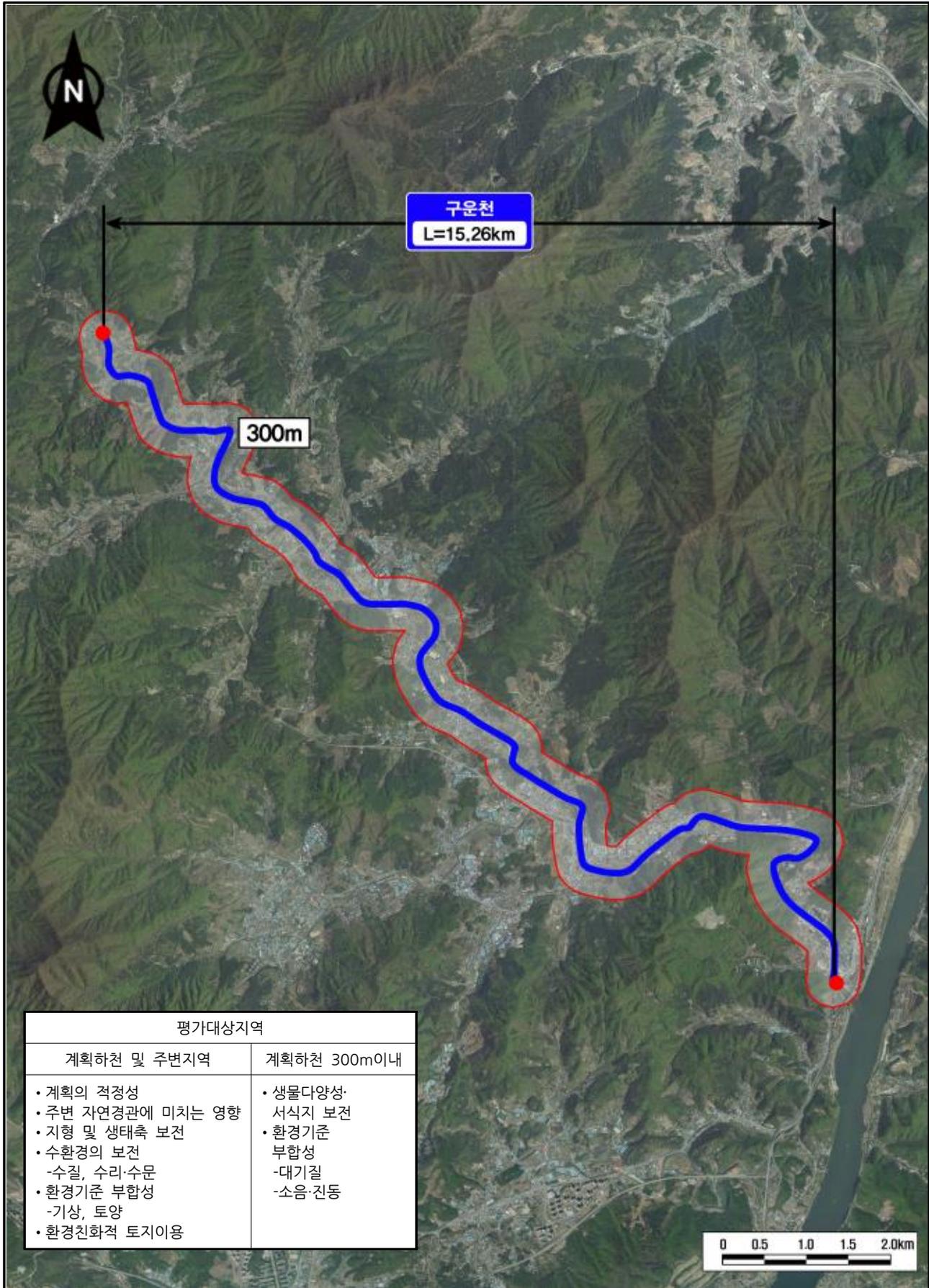
-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선정한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영향예측의 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2 -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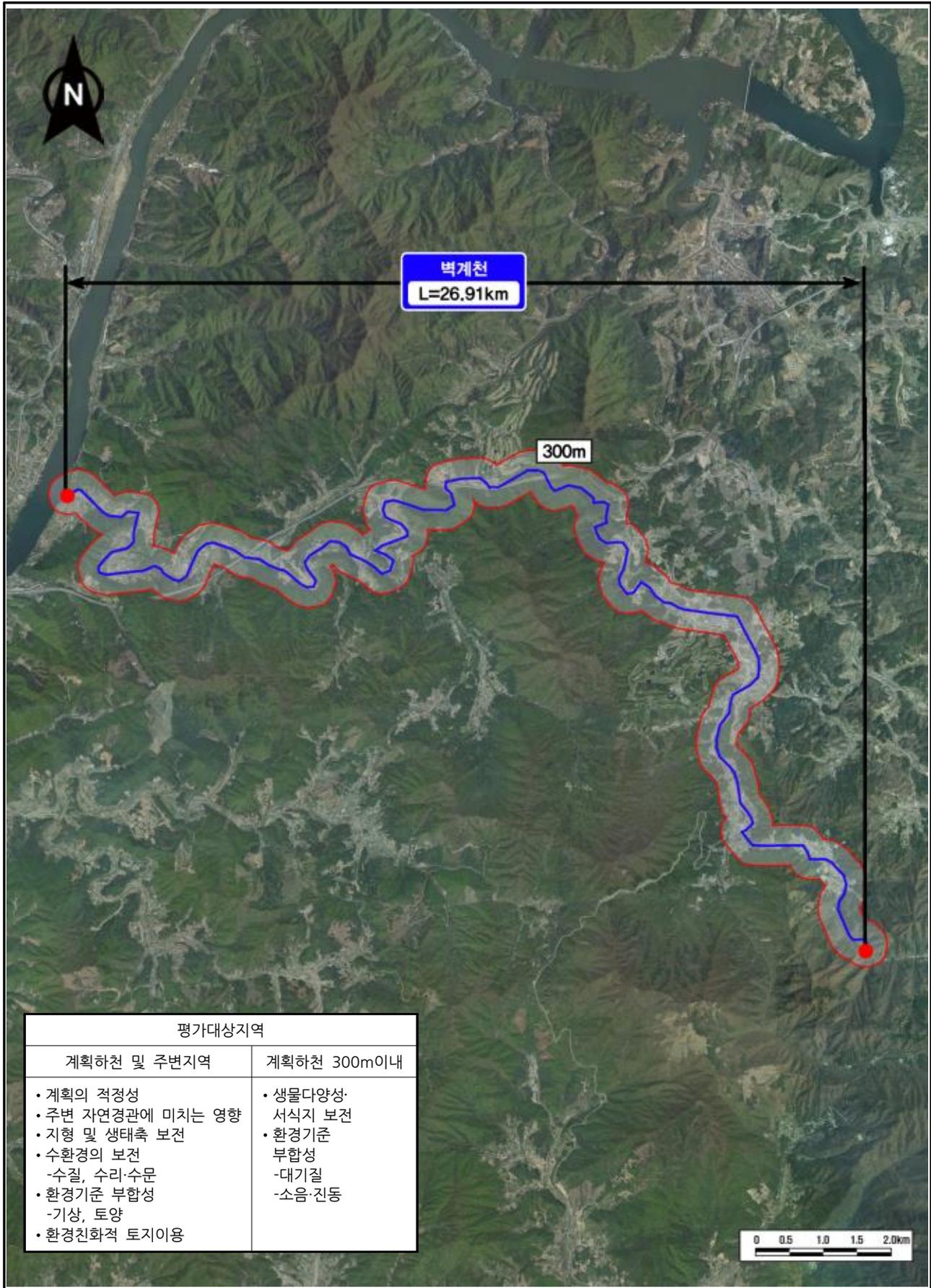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하천	· 문헌조사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하천	·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 대안선택을 통한 적정성 분석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계획하천 및 경계 로부터 300m 이내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계획수립 범위를 고려하여 보전하여야 할 동 식물 현황 및 서식환경을 파악하고 생태계 영향을 예측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계획내용을 토대로 지형변화 및 생태축 변화 여부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하천환경정비시 주변 지역에 미치는 경관영향 검토	
	수환경의 보전	· 계획하천 및 지류하천 · 현황조사 - 지표수질 : 20지점 - 하천저질 : 20지점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수질모델링 · 하천정비로 인한 토사유출 등 부유물질이 하류 수계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검토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홍수위 등 변화 - 제방 등 하천시설물 설치에 따른 수리·수문의 변화 예측 · 수질오염총량지역 내 오염부하량 예측 및 장래 수질 예측	
인공의 타 영향	생활환경의 안정성	기상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 기상대 최근 10년 기상자료 분석	
		대기질	· 계획하천 및 경계 로부터 300m 이내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시 장비가동에 의한 대기오염영향 예측 및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평가	
		토양	· 계획하천 · 문헌조사 · 공사시 폐유발생, 지장물철거 등에 의한 토양 오염 영향예측	
		소음· 진동	· 계획하천 및 경계 로부터 300m 이내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시 장비가동에 의한 소음·진동영향 예측 및 환경기준 등과 비교·평가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하천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시 작업인부 및 투입장비에 의한 폐기물 (분뇨, 폐유)을 원단위를 적용하여 예측·분석
		온실가스	· 계획하천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시 장비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및 탄소흡수량 변화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하천	· 문헌조사 · 하천정비에 의한 토지이용변화 예측·분석	



[그림 2 - 1]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도(미원천)



[그림 2 - 2]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도(구운천)



[그림 2 - 3]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도(벽계천)

## 2.2 환경질 현황 조사계획

### 가. 조사목적

- 환경질 조사는 계획하천 및 지류하천의 환경현황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한편,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협의결과 등에 따라 조사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가. 조사계획

#### (1) 조사지점

- 환경질 조사지점은 사업계획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계획하천, 지류하천, 영향예상지역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조사지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조사지점 선정기준
  - 본류 기준 3km 당 1지점
  - 지류하천 중 규모가 큰 하천의 합류 전 지점, 지류하천 합류 후 본류 지점 (장래수질 예측 시 Point-source로 반영)

#### (2) 조사항목 및 지점

-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2 - 3〉 조사항목 및 지점

구 분	하천명	조사지점	조사회수	조사수량	조사항목
하천수질	미원천	6	3회	18	pH, BOD, COD, DO, SS, TOC, T-N, T-P, Cd, CN, Hg, As, 유기인, Pb, Cr <sup>6+</sup> , ABS, PCB, 총대장균군, PCE, 수온, 유량, 사업화탄소
	구운천	5	3회	15	
	벽계천	9	3회	27	
	계	20	-	60	
하천저질	미원천	6	1회	6	COD, T-N, T-P, Cd, Pb, As, Ni, Hg, Cr, Cu, Zn, 강열감량, 입도분석
	구운천	5	1회	5	
	벽계천	9	1회	9	
	계	20	-	20	

## 2.3 대안의 설정

### 가. 대안의 종류 선정

- “대안”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함
- 본 계획에 대한 대안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환경부, 2017.12」에 의거하여 대안을 선정하였음
- 본 계획은 청평댐권역 지방하천 3개소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으로 연장 59.27km를 대상으로 하며, 계획비교, 수단·방법 및 수요·공급 대안을 선정하여 비교·검토함

〈표 2 - 4〉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설정방법	선정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89호(2020.12.22.)

〈표 2 - 5〉 대안의 선정 및 미선정 사유

종 류	선정여부	미선정 사유
입 지	미선정	• 본 계획은 기본계획수립 특성상 하천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계획으로 별도의 개발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이 아니므로 대안선정이 불가능하여 제외하였음
시기순서	미선정	• 본 계획은 계획홍수위와 기존 제방고를 비교·검토하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과 홍수시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가능한 빠른 시기가 최적의 대안임
기 타	미선정	• 본 계획시행에 따른 [기타] 대안은 없으나 향후 하천정비사업 시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제시 시 적극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음

**나. 대안의 비교 검토**

- 본 개발기본계획의 대안은 「계획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 등에 대해 대안 선정함

**<표 2 - 6> 대안 선정 결과**

대안종류	선정기준 및 내용		선 정
계획비교	대안1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No action)	-
	대안2	•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action)	○
수단·방법	대안1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
	대안2	• 제방축제	○
		• 제방보축 • 제방보축+하도정비	
수요·공급	대안1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
	대안2	• 치수계획 기준빈도 80년 이상 (설계시 자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1)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 비교 및 평가**

- 계획비교에 대한 대안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No action)와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Action)를 대안으로 선정함

**<표 2 - 7>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 검토**

구 분	대 안	
	대안1 : 현상태 유지 (No Action)	대안2 :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Action)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하천을 유지함으로써 인위적인 계획 없음</li> <li>• 공사시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분진 등의 문제 발생 소지 없음</li> <li>• 공사비 발생하지 않음</li> <li>•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자원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성 증대</li> <li>• 사업 시행에 따라 하천 및 인근지역 정비로 자연재해 대비</li> <li>• 수해에 대한 피해를 경감시킴으로써 수해복구 비용 등에 대한 경제적 손실 경감</li> <li>• 하천정비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시행으로 생활환경 증진</li> <li>• 하천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하천의 수변 경관 개선</li> </ul>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시 인근지역의 침수 등이 예상됨</li> <li>• 홍수, 태풍 등의 수해에 대한 피해 복구비용으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됨</li> <li>• 하천공간의 관리 및 이용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 정비공사시 일시적으로 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li> <li>• 제방공사로 인한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을 줄 것으로 예상됨</li> </ul>

〈표 2 - 8〉 계획비교 대안 비교 및 평가

구 분	적정성 검토	
	대안 1(No action)	대안 2(action)
토지이용 측면	• 토지이용계획상 변화는 없으나, 하천공간의 이용효율성 저하	•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토지이용상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수자원 이용측면	• 비계획적인 하천 관리·운영으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 저하	•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수자원 이용·관리의 효율성 증대
각종 보호 지역에 미치는 영향	• 계획 미시행으로 영향 없음	• 계획하천 일부 구간에 생태자연도 1등급 등이 위치하나, 적절한 저감방안 수립을 통해 영향 최소화
생태계 훼손 가능성	• 계획 미시행으로 영향 없음	• 계획시행에 따른 일부 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있으나,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
지형 훼손에 미치는 영향	• 지형 변화 및 지형 훼손 없음	• 제방 공사 등으로 인해 일부 지형 훼손이 예상되나, 자연친화적인 공법 도입을 통해 영향 최소화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 자연재해(이상강우, 집중호우, 태풍 등) 발생시 인근 지역의 침수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미치는 영향	• 현 상태의 생활환경 유지하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공사시 대기질,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이 예상되나,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 미시행으로 경관상 변화는 없으나, 일부 치수적으로 불량한 호안 및 노후, 파손된 하천시설물 등 부정적인 영향 예상	• 공사에 따른 일시적인 경관변화가 예상되나, 주변 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계획수립으로 경관상 미치는 영향 최소화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공사시 비산먼지, 소음, 부유토사 등의 발생으로 일시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저감방안 이행시 영향 최소화 예상
선 정 안		○
선정사유	• 하천은 홍수피해와 하천환경오염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하천정비 및 관리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바, • 재해방지, 하천의 다목적 관리이용, 환경개선 및 보존 등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조사 분석하여 효율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천 재해 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천정비를 시행(Action, 대안 2)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2) 수단·방법 대안의 비교 및 평가

-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은 이·치수 및 환경 달성을 위한 방법을 대안으로 선정함

〈표 2 - 9〉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 검토

구분	대안1	대안2		
		제방축제	제방보축	제방보축+하도정비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상태 유지에 따른 필요 공사비 없음</li> <li>• 치수안정성 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방축제로 하천공간 확보 (홍수시 안정성 확보)</li> <li>• 제내지 편입면적증가</li> <li>• 하천내 구조물(보, 낙차공 등) 신설, 보수 및 보강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방보축으로 하천공간 확보 (홍수시 안정성 확보)</li> <li>• 제내지 편입면적증가</li> <li>• 기존 제방을 활용하여 경제성 확보</li> <li>• 하천내 구조물(보, 낙차공 등) 신설, 보수 및 보강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방보축 및 하도정비(준설)로 하천공간 확보 (홍수시 안정성 확보)</li> <li>• 제내지 편입면적 최소화</li> <li>• 수생생물의 서식환경 변화</li> <li>• 하천내 취수시설물 보호 대책 필요</li> <li>• 하천내 구조물(보, 낙차공 등) 신설, 보수 및 보강 필요</li> </ul>
선정	-		○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내지 편입면적이 다소 증가하나 수생생물의 서식환경 및 취수시설물 보호를 위해 계획하천을 고려한 축제, 보축, 보축+하도정비계획 수립</li> </ul>			

### (3) 수요·공급 대안의 비교 및 평가

- 수요·공급 대안은 현상태 유지시(대안1)과 금회 수리·수문분석 시행을 통한 계획수립(대안2)로 구분하여 비교·검토하였음

〈표 2 - 10〉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 검토

구분	대안1	대안2
기준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상태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수계획 기준빈도 80년 이상 (금회 수리·수문분석 시행을 통한 계획수립)</li> </ul>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입부지 및 공사비 미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수안정성 확보 용이</li> <li>• 설계빈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향에 부합하는 치수계획 수립가능</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설계기준에 미달되는 하천의 경우 지역주민의 인명 및 사유재산 피해 우려</li> <li>• 치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적으로 공사규모가 늘어나게 되어 공사 대상지역 증가</li> <li>• 치수사업의 규모 공사비 증가</li> </ul>
선정	-	○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평댐권역의 홍수피해 경감 및 방지를 위한 계획 홍수량은 치수안전도 설정기준, 하천의 중요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하천관리처의 치수관리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li> </ul>	

## 2.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가. 주민 의견수렴 경위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나. 주민 의견수렴 경위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을 이용하여 14일 이상 공개할 계획임

#### (2)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등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 (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을 시행할 계획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각 1회 이상 신문공고
  - 정보통신망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게재
    - ※ 주민설명회 계획을 포함하여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40일 범위(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공람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마다 공람장소를 1개소씩 설치하고, 공람장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함께 ‘주민의견 제출서’를 비치할 계획임
    -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경기도 가평군, 남양주시, 양평군

**(나)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며,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은 평가대상지역 관할 지자체와 협의·결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시 개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나의 시·군·구에서 개최할 수 있음
-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다)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제3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내용

- 심의기간 : 2021. 3. 2 ~ 2021. 3. 19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승인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협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 협의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2인

구분	소속 / 부서		직위 (직급)	성명	
위원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국 장	이 * *	
위원	한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		주 무 관	박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		과 장	남 * *	
	민간전문가(강원대학교)		교 수	박 * *	
	민간전문가(한경대학교)		교 수	안 * *	
	지방 자치 단체	가평군(환경과)		과 장	권 * *
		남양주시(환경정책과)		과 장	문 * *
		양평군(환경과)		과 장	김 * *
	가평군 주민대표		주민대표	김 * *	
	남양주시 주민대표		주민대표	남 * *	
	양평군 주민대표		주민대표	박 * *	
	경기도 시민단체		회 원	이 * *	



청평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신자 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 가평군수(환경과장), 남양주시장(환경정책과장), 양평군수(환경과장), 강원대학교 박준석 귀하, 한경대학교 안태진 귀하, 가평군 주민대표 김영복 귀하, 남양주시 주민대표 남궁완 귀하, 양평군 주민대표 박원섭 귀하, 가평군엔지니어링협의회 이상윤 귀하

주무관	<b>이종찬</b>	주무관	<b>박운상</b>	하천공사과장	<b>남택연</b>	하천국장	전결 2021. 2. 25.
협조자							<b>이강녕</b>
시행	하천공사과-436	(2021. 2. 25.)	접수				
우	2646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반곡동) 4층 하천공사과				/	<a href="http://www.molit.go.kr/wrocm">http://www.molit.go.kr/wrocm</a>
전화번호	033-769-5694	팩스번호	033-744-8473	/	<a href="mailto:chany729@molit.go.kr">chany729@molit.go.kr</a>	/	비공개(5,6)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2 - 2

[그림 3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시행문서(2/2)

### 3.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가. 원주시방국토관리청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청평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총괄의견

- 계획하천의 생태현황, 하천 이용현황, 관리목표 등을 고려하여 이·치수 목적 외에도 환경·생태적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시 환경영향예측 및 이에 따른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계획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계획안(대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지속가능한 하천기본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는 3개 이상의 대안을 선정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환경친화적인 대안을 선정하여야 함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부합성, 연계성을 검토하고 계획하천 주변 생태특성 및 현황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시기에 현황을 조사하여야 함

4. 약식평가 가능여부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계획하천 주변 토지이용 및 환경오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주민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

6. 기 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현황조사 외에 관련 최신 문헌자료 적극 활용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2021. 3. .

심의위원 : 남



나.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청평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 총괄의견

- 본 계획은 경기도 가평군 일원의 미원천, 남양주시 일원의 구운천, 양평군 일원의 벽계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정비공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하천의 이·치수 기능뿐만 아니라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의 적정성을 중점 검토해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동·식물상 평가대상지역(중점지역) 범위는 생태계의 연결성(생태축)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 대기질 및 소음·진동 평가대상지역 범위는 기상 현황(주풍향 등) 및 주변 정온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의 기존 수계, 선형 및 구배를 최대한 유지하고 하상구조를 불필요하게 훼손하지 않는 등 자연성을 보전하는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3. 대안

- 자연식생이 발달된 구간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인접한 구간은 이·치수의 안정성 범위 내 정비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보전하는 등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
- 축제 및 보축 등에 따른 시설물(호안 등) 설치 계획 시 하천생태계 복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식생도입이 우수한 환경친화적인 호안공법들을 조사·비교하고, 선정된 호안공법에 대한 선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제방 및 호안은 야생동물의 이동성 확보를 위해 비탈면은 최대한 완만하게 조성하고 사면처리는 친환경공법으로 계획
- 보 또는 낙차공은 하천의 연속성과 생물의 분산능력 및 통수효과를 저해하므로 존치 및 재가설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 및 존치목적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이를 최소화하여야 함
- 하도 내 하상정리, 굴착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므로, 하상 변동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식물상)** 동·식물조사는 계절특성을 반영하고 생육·활동이 왕성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사 시기, 조사 횟수, 지점·범위 등을 선정하여야 함
- **(수질)** 계획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 개선방안 및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토지이용)** 하천 공간환경 관리계획(지구지정)은 계획하천에 대한 향후 관리방향 설정의 기본적인 지침이 되므로, 하천 구간별 생태적인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평가 대상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시된 의견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

6. 기 타

- 관련계획과의 부합 및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관련계획에서 검토된 내역을 참조·인용 시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함
-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과 금번 계획의 홍수량(홍수위)을 비교하여 금회 계획에 신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 필요성 등을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상 시설물 계획과 비교·제시하여야 함
-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 문헌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제시하여야 함
- 하천과 관련된 계획임을 감안, 공사시행으로 인한 탁수영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목표 설정 검토·제시

2021. 3. 12.

심의위원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다. 민간전문가(강원대학교)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청평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총괄의견

- 본 사업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계획이 전반적으로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
  - (p14) 대기질과 기상은 다소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하여 사유 및 대상지역 설정 요망
2. 대안의 설정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
  - (p60)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2는 제방 위주로만 제시되어 있으나, 보다 친환경적인 대안(예. 친환경 호안조성, 인공습지 등)에 대한 비교, 분석도 추가할 수 있는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
  - (p66) 하천저질 조사항목 중 : Cr → Cr<sup>6+</sup>
4. 약식평가 가능여부 : 의견없음( ✓ ), 수정의견(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 ), 수정의견( )
6. 기 타 : 의견없음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 )

2021. 3. 10.

심의위원 : 박 

라. 민간전문가(한경대학교)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청평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 총괄 의견

- 청평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천정비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주요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설정에서는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에 관한 물량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각 중점 평가항목에 관한 현황,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환경변화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평가항목·범위 등에 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     ), 수정의견 ( √ )
  - 하천생태계의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항목인 동·식물상은 각 계획하천의 북한강 합류부 부근(일정 범위)을 포함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음(제시한 횡단방향 주변지역 300m 포함).
2. 토지이용계획(대안) : 의견없음 ( √ ), 수정의견 (     )
  -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청평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     ), 수정의견 (    √   )
- 동식물상 조사는 4계절을 반영하는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현지조사 계획이 부족한 경우) 문헌조사를 충실히 시행하여야 함.
  - 수질조사는 20개 지점/3개하천에 3회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 바, 하천의 갈수기, 저수기 및 평수기에 유량을 측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정함.
  - 도입되는 호안공은 미생물의 이동이 용이한 공법인지의 검토가 필요함.
  - 공사시 예상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방안도 제시될 필요가 있음.

4. 약식평가 가능여부 : 의견없음 (    √   ), 수정의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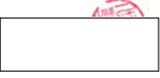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    √   ), 수정의견 (     )

6. 기 타

- 평가준비서에 대한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한 추가 의견 제시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   )

2021. 3. 12.

심의위원 안  (인)

마. 지방자치단체(가평균)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청평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총괄의견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2. 토지이용계획안(대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 수정의견(✓)

평가대상 하천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환경에 대한 평가범위를 계획하천,지류하천 뿐 아니라 유입하천(북한강) 일부구간 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수질현황 조사시는 계절별 특성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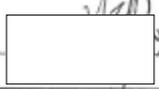
4. 약식평가 가능여부 : 의견없음(✓), 수정의견(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수정의견( )

6. 기 타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2021. 3. .

심의위원 : 권 

바. 지방자치단체(남양주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청평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총괄의견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하고, 예측하지 못한 환경오염 등에 대비하여야 함.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적인 피해 등이 예상되는 주요 항목별 대상지역범위 확대 필요함.

2. 토지이용계획안(대안)

- 자연 친화적, 지속 가능한 대안을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함.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기후변화 현상 등으로 비번해지는 자연재해 등에 대해 계획구간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마련.

4. 약식평가 가능여부

- 의견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함.

6. 기 타

- 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지역으로 개발부하량 범위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배출부하량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삭감시설(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

2021. 3. .

심의위원 : 문

사. 지방자치단체(양평군)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청평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총괄의견

- 하천기본계획 계획 수립시 하천의 수생태계에 영향을 최소화하며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야함.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 ), 수정의견( )
2. 토지이용계획안(대안) : 의견없음( √ ), 수정의견( )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 ), 수정의견( )
4. 약식평가 가능여부 : 의견없음( √ ), 수정의견(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 ), 수정의견( )

6. 기 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 )

2021. 3. .

심의위원 : 김

아. 주민대표(가평균)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청평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총괄의견

1 | 평가항목 · 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2. 토지이용계획안(대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3.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의견없음(✓), 수정의견( )
4. 약식평가 가능여부 : 의견없음(✓), 수정의견(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수정의견( )
6. 기 타

○- 하천의 급류지역이나, 곡선 반경이 큰 물링 게이트 곡면에, 홍수 피해의 발생이 연속적 반복되는 구간에는 기존 제방위주의 선적인 홍수방어 개념을 유역 전체 차원의 면적 홍수 방어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역종합 치수계획의 필요성 제기됨.

- 하천의 한 단면에서 물이 수로의 벽면과 접촉하는 길이 윤변을 넓게 하여 홍수피해의 발생이 연속적 반복되는 구간의 홍수단면을 키워 유속을 줄여주는 방안검토.
- 환경 피해와 파괴의 최소화.
-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홍수단면 확보를 위한 토지의 친환경 면적 확보필요.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 · 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2021. 3. 12

심의위원 : 김

자. 주민대표(남양주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청평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총괄의견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2. 토지이용계획안(대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4. 약식평가 가능여부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6. 기 타

○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2021. 3. . 18

심의위원 : 



차. 주민대표(양평군)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청평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 총괄의견

○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할 목표는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재해·제난 예방과 하천 정비 공사로 인한 주변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두어야 한다.

더불어 하천은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가 창출되는 마을 공동체의 자연유산으로 보존과 활용 두 측면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동의 받고 진행되어야 한다.

□ 평가항목·범위·도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2. 토지이용계획안(대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토지이용계획상 변화가 없을 시 의견 없음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

4. 약식평가 가능여부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주민 등의 의견 수렴(설명회)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평가 자료가 필요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필히 설명회와 공청회는 별개로 개최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만을 시행 할 경우 주민들의 본 하천기본계획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접하지 못 할 수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청회도 생략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본 사업에 대한 불신을 줄 수 있다.

6. 기 타

○

□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서면심의( )

2021. 03. 29

심의위원 : 박

[Blank box for signature]

카. 경기도 시민단체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 의견**

(사업명 : 청평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총괄의견

- 홍수시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검토 및 하천퇴적지에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여 수립을 검토요.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 수정의견( 0 )

- 홍수시 침수지역에 대한 지역 포함 검토( 강우강도,빈도)

2. 토지이용계획안(대안) : 의견없음( 0 ), 수정의견( )

- 

3.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의견없음( ), 수정의견( 0 )

- 토사 퇴적지 및 댐주변 퇴적에 대한 평가 검토

4. 약식평가 가능여부 : 의견없음( ), 수정의견( 0 )

- 종합적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영향요소 제시 필요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 수정의견( 0 )

- 자세하고 세부적인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주민의 하천기본 계획 수립을 이해가 필요

6. 기 타

-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0 )

2021. 3. 10

심의위원 : 이

